

第 96・97 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會 議 錄

('98. 11. 17. ~11. 19./11. 30. ~12. 3.)

忠清北道教育委員會

第 96 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98. 11. 17. ~ 11. 19.)

忠清北道教育委員會

(本會) (會) (會) (會) (會)

本會會籍

(一九二一年一月一日)

會員委員會

목

차

1998 • 11 • 통권 제61호

I. 제9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3
II. 제9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9
III. 제9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13
IV. 부 록	
1. 의사일정	17
2.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	19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35
4.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안	41
5.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53
6.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증개정규칙안	61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8년 11월 17일 (화요일) 11시 00분

議事日程 (제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9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개정조례안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이영규)
2. 제9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안(교육감 제출)
6.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개정조례안
(교육감 제출)
7.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사회 : 의사계장 신용건)

(11시 00분 개식)

● 의사계장 신용건

지금부터 제9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제96회-제1차]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주악)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바로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1시 02분 개의)

● 의장 조일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과장 발언대로 나눔)

1. 경과보고

● 의사과장 이영규

의사과장 이영규입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 및 집회 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98년 11월 6일 집행청으로부터 집회요구되어 11월 7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공고 제 98-11호로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회기 의결안건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제92회 임시 회의에서 의결하신 바 있는 '9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8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비비지출승인안, '98년 10월 20일 제1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7일 제95회 정기회 제 9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같은 날 집행청으로 이송 하였습니다.

금일은 집행청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 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의사과장 자리로 돌아감)

2. 제9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 05분)

● 의장 조일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이미 통보된 바와 같이 제9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11월 19일까지 3일간으로 하여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4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제9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11월 17일부터 11월 1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안

6.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6분)

● 의장 조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집행정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발언대로 나눔)

● 부교육감 곽창신

부교육감 곽창신입니다.

존경하는 조일환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충북 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격려와 지원을 하여 주시는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9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에 부의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 드릴 순서는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 둘째,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셋째,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안, 넷째,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가 폐지되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과 동규정시행규칙이 '98년 10월 16일자로 제정 공포되어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는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두는 국장, 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 그리고 본청의 과·담당관, 직속기관의 부·과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교육규칙에 위임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96회-제1차]

본청의 초등교육국과 중등교육국을 교육국으로 통합하고 공보담당관 및 행정관리담당관을 폐지하는 등 1국 3과를 축소하고 관리국은 기획관리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교육연구원과 과학교육원을 교육과학연구원으로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며 충청북도단재교육원은 학생의 수련기능 외에도 교직원의 연수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명칭을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또한 충북수영장, 청주수영장, 충주수영장은 설치조례를 폐지한 후 관리를 인접 학교에 이전하고자 하며 조례를 통합하여 제정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 외 7건의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기구의 명칭이 변경되고 계단위 조직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다른 조례의 자구정리와 기타 경미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참 조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 : 별첨2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저비용 고효율 조직으로 재구성을 위해 총정원제가 도입됨에 따라 충

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도교육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2,828명으로 현 정원 3,130명 중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2명과 도교육청에서 300명 등 302명을 감축한 2,828명으로 한 후 정원관리의 기관 단위별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정원 감축에 따른 과원이 발생한 현원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경과 규정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 참 조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 별첨3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 및 충청북도교육청기구설치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제135조에 의하여 각종 시설 및 설비 등의 사용료와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을 지우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 및 일반적인 운영사항을 통합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기관별 사용료 및 설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이며

이용자의 제한규정 및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변상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운영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참 조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 관한조례안 : 별첨4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 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부의 지방교육 행정기관 구조조정으로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과 동시행규칙에 따라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조직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정근거 법령인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기구의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삽입하고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 조직을 폐지함에 따라 현행 의사계와 의안계를 폐지하고 의사과의 분장사무를 신설하며 지방공무원 감축 추진 계획에 의거 의사국의 정원을 현재 15명에서 2명을 감축한 13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위원회 교육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 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5

(끝에 실음)

(부교육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조일환

부교육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들으신 4건의 조례안은 본 회의를 산회한 후 별도로 협의하는 시간을 갖 고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7.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11시 14분)

● 의장 조일환

다음은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금회 회의록 서명위원은 손만재, 송진하 두 위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9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제96회-제1차]

0 출석위원 : 7명

의장 조일환, 부의장 이기수, 위원 김광수, 손만재, 송진하,
이상일, 이충원.

0 출석공무원 : 14명

교육감 김영세,	부교육감 곽창신,	초등교육국장 민병구,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관리국장 조신행,	공보담당관 신준우,
기획감사담당관 김진성,	행정관리담당관 김성기,	초등장학과장 김천호,
초등교직과장 유승덕,	총무과장 고일영,	행정과장 이기수,
재무과장 김흥목,	시설과장 오형균	

※ 부 록

- ▶ 의사일정(안) : 별첨1
- ▶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 : 별첨2
-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 별첨3
- ▶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안 : 별첨4
- ▶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5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8년 11월 18일 (수요일) 11시 01분

議事日程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김광수위원 외 2인 위원 발의)

(11시 01분 개의)

● 의장 조일환

좌석이 모두 정돈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 김광수위원 외 두분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이 공동 발의돼서 금일 의사일정 포함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동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심의·의결을 하시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

규칙안

● 의장 조일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발의 위원을 대표하여 김광수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광수위원 발언대로 나눔)

● 김광수 위원

김광수 교육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규칙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 6월 3일 법률 제5546호로 지방교

[제96회-제2차]

육자치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도 교육위원 수가 종전의 11명에서 현재의 7명으로 줄여 현행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으로 정한 소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수로는 정상적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실있는 의안심의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즉,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위원회의 위원 수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감사·조사소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규정에 의할 경우 위원 정원이 7명인 우리 교육위원회는 단지 3명의 위원으로써 예산·결산위원회나 조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종 의안을 심의하여야 함으로 제대로 된 의안심의를 하기에는 소위원회 구성 위원 수가 절대 부족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위원회 구성 위원 수에 대한 제안 규정을 삭제하고, 소위원회 구성의 신축성을 부여함으로써 충분한 수의 위원이 소위원회 구성에 참여하여 내실있는 의안심의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본 규칙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문인 제37조2항을 현행의 “위원회 위원 수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재적위원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다만, 감사·조사소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에서 “소위원회 위원수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로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규칙개정안과 관련한 신·구조문대조표와 관계조문 발췌서 등 참고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외 2인 위원이 공동발의한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 별첨6

(끝에 실음)

(김광수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조일환

김광수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p>선포합니다.</p> <p>이것으로 오늘의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자 합니다.</p> <p>오늘도 본회의 산회후 부의 안건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내</p>	<p>내일은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안 등 4건 의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p> <p>이상으로 제9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 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p> <p>(11시 08분 산회)</p>
--	---

0 출석위원 : 7명

의장 조일환, 부의장 이기수, 위원 김광수, 송진하, 손만재, 이상일,
이충원.

※ 부 록

- ▶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 별첨6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8년 11월 18일 (목요일) 11시 00분

議事日程 (제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개정조례안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안(교육감 제출)
6.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개정조례안
(교육감 제출)

(11시 00분 개의)

● 의장 조일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의 개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본 회기 첫날

제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있는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

(11시 01분)

● 의장 조일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집행청 관계관계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후 상정되는 안건들에 대하여도 역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거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 본 건에 대하여 이의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 조례안

(11시 02분)

● 의장 조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역시 질의 있으시거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 조례안

(11시 04분)

● 의장 조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거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역시 본 건에 대하여 이의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

이용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 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5분)

● 의장 조일환

오늘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거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위원 발의로 상정된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집행청에서 제출된 4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모두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어느덧 본격적인 겨울에 접어들어 날씨가 제법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제3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9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제96회-제3차]

0 출석위원 : 7명

의장 조일환, 부의장 이기수, 위원 김광수, 손만재, 송진하,
이상일, 이충원.

0 출석공무원 : 14명

교육감 김영세,	부교육감 곽창신,	초등교육국장 민병구,
중등교육국장 최성태,	관리국장 조신행,	공보담당관 신춘우,
기획감사담당관 김진성,	행정관리담당관 김성기,	초등교직과장 유승덕,
과학기술과장 윤주택,	총무과장 고일영,	재무과장 김홍묵,
시설과장 오형균		

제9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1998. 12.

의 장

조 일 환



위 원

손 만 재



위 원

송 진 하



의사국장

강 인 형



(별첨1)

議 事 日 程

第96回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1998.11.17.~11.19.(3일간)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98.11.17.(화) 10:30 11:00	<input type="checkbox"/> 교육위원 협의회 : 교육위원실 <input type="checkbox"/> 개회식 [제1차 본회의 개의] 1. 제9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기 : 1998.11.17.~11.19.(3일간) 2.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신설조례안(제안설명)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제안설명) 4.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안(제안설명) 5.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 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제1차 본회의 산회]	
11.18. (수) 11:00	[제2차 본회의 개의]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제2차 본회의 산회]	
11.19. (목) 11:00	[제3차 본회의 개의] 1.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 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차 본회의 산회] ※ 폐 회	

(별첨 2)

의안번호	제 96-1 호
의결 년 월 일	1998. 11. .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8. 11. 7 .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안
번호

96 - 1

제출년월일 : 1998. 11. 7.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관련 부서 : 행정관리담당관

□ 제안이유

중전의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대통령령 제15630호)”가 폐지되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5916호)과 동규정시행규칙(교육부령 제725호)이 '98.10.16자로 제정·공포되어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본청과 직속기관별로 각각 운영되었던 기구설치 조례를 통합 제정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두는 국장·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함(안 제2조)
- 본청의 과·담당관, 직속기관의 부·과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함(안 제3조)
- 지역교육청의 하부조직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함(안 제4조)
- 본청의 초등교육국과 중등교육국을 교육국으로 통합하고, 관리국은 기획관리국으로 개편함(안 제6조, 제7조)
-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교육연구원과 과학교육원을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으로 통합(안 제8조)

- 통합조례 제정으로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의 7건의 조례를 폐지함(안 부칙 제2조)
- 충북수영장, 청주수영장, 충주수영장은 설치조례 폐지후 관리권을 인접 학교장에게 이관(안 부칙 제2조제7항)
- 기구명칭 변경, 계단위 조직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다른 조례의 자구정리와 기타 경미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안 부칙 제3조)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과 같음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내지 제43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담당관·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두는 국장·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과·담당관의 설치 등) 본청의 과·담당관 및 직속기관의 부·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역교육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 지역교육청 하부조직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장 본 청

제5조(국의 설치)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육국 및 기획관리국을 둔다.

제6조(교육국) 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과정의 운영 및 지도
2. 교수학습방법의 개선 및 지도
3. 장학지도, 학예행사 및 학생의 생활지도
4. 장학생 선발, 장학금 관리 및 국외유학에 관한 지도
5. 교원의 자격·인사·교육·복리에 관한 사항
6.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7. 과학 및 실업교육에 관한 사항
8. 교육행정 전산화 및 교육정보화 계획수립 및 지원
9. 평생교육의 진흥
10. 평생교육시설 및 학원의 설립·폐지 및 운영지도
11. 학교체육 및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12. 학교보건 및 학교급식 관련 업무
13. 공익법인의 설립·해산 및 운영지도
14. 직속기관에 대한 지원과 운영지도

제7조(기획관리국) 기획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교육행정의 기획조정,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3. 교육개혁에 관한 사항
4. 행정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공·사립학교의 설립·폐지 및 지원·육성 등에 관한 사항
6. 학생 수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시책의 수립·실시
8. 예산의 편성·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

9. 의회협력에 관한 업무총괄 및 지원
10. 행사·문서 및 보안에 관한 사항
11.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 및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12. 지방공무원의 인사·교육·복리에 관한 사항
13. 법제에 관한 사항
14.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15. 비상사태에 대비한 업무 및 직장 민방위에 관한 사항
16.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 시설계획 및 투자계획의 수립·조정·집행에 관한 사항

제 3 장 직 속 기 관

제 1 절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제8조(설치) ①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조사하고, 교육현장 지도와 진로지도, 교육자료를 개발하며 과학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학생의 탐구학습 및 교원의 연구활동을 조장·지원하여 지방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연구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수동 180번지에 둔다.

제9조(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업무) 연구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 지도
2. 현장교육 조사 연구 및 개발업무에 관한 사항
3. 교단지원 자료 개발·보급
4. 학생 교육상담 및 생활지도 자료 개발·보급
5. 진로·직업교육 진흥에 관한 자료 개발·보급

- 6. 과학·기술교육 진흥에 관한 자료 개발·보급
- 7. 교육정보화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제 2 절 충청북도단재교육원

제11조(설치) ①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재의 일을 이어받아 학생들의 인격을 도야하고 애국애족 하는 학생상을 정립하며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자질향상과 투철한 교직원을 확립, 국민교육에 헌신하도록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단재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교육원은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상야리 산 4-23번지에 둔다.

제12조(원장) 교육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업무) 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 수련 및 공무원 연수에 관한 계획과 조정
2. 연수과정 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재의 제작·편찬 및 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4. 연수생의 평가와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제 3 절 충청북도중앙도서관

제14조(설치) ①법 제41조 및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를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축적하여 공중의 열람 및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 조사, 연구, 학습, 교양 등 평생교육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도서관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2동 38-6번지에 둔다

제15조(관장) 도서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업무) 도서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기타 사회교육 및 문화활동의 주최 또는 장려
4. 다른 도서관과의 자료 교류
5.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 연구
6. 기타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 4 절 충청북도학생회관

제17조(설치) ①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들의 교양증진, 소질계발, 정서순화 등 전인교육에 기여하고, 여가 선용을 통한 특별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건전한 인격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학생회관(이하 “학생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학생회관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동 79번지에 둔다.

제18조(관장) 학생회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9조(업무) 학생회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청소년의 문예 및 체육활동의 공간 제공
2. 도서실 운영
3. 청소년에 대한 교육·문화활동 전개
4. 청소년의 교양증진, 소질계발, 정서순화 등에 필요한 사항

제 5 절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

제20조(설치) ①법 제41조 및 청소년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대자연과 접하게 하여 정서를 순화시키고 진취적 기상과 의욕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야영장은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산 4번지에 둔다

제21조(장장) 야영장에 야영장장을 두며, 장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2조(업무) 야영장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각급학교 학생들의 수련활동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단체 단원들의 야영과 수련활동
3.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와 수련활동

제 6 절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

제23조(설치) ①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계고등학교 교원 및 학생에게 첨단산업 기자재의 실습을 통하여 교수·학습능력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산업현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이하 “공동실습소”라 한다)를 둔다.

②공동실습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제24조(소장) 공동실습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5조(업무) 공동실습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산업기계 공동실습교육
2. 실업계 교원의 농업 또는 공업관련 특별연수
3. 기타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수 및 교육활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충청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조례 제2296호)
2. 충청북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조례 제2117호)
3. 충청북도단재교육원설치조례(조례 제2053호)
4.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조례 제2294호)
5. 충청북도립학생회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조례 제2295호)
6.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조례 제2406호)
7. 충청북도수영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조례 제2236호)
8.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조례 제2253호)

제3조(직속기관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제8조제2항은 동 위치에 신축중인 건물
이 준공되어 이진후 업무개시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제14조제2항중 “행정관리담당
관”을 “기획관리과장”으로 한다.

②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인사계장”을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③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과·담당관 또는 계”를 “과·담당관”으로, 제9조제1호중 “관리국
총무과 서무계장”을 “기획관리국 총무과 업무담당사무관”으로, 동조제2호중 “서
무계장”을 “업무담당주사”로, 동조제3호중 “관리국 총무과 민원봉사계장”을 “기
획관리국 총무과 업무담당사무관”으로, 동조제4호중 “담당업무 주무계장”을 “주
무담당사무관”으로, 동조제5호중 “경리계장”을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④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⑤ 충청북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동조제3항중 “초등교육국장, 관리국장, 사회교육체육과장, 초등장학과장, 과학기술과장, 행정과장, 중앙도서관장, 및 충청북도 사회과장, 부녀청소년과장”을 “기획관리국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교육정보화과장, 기획관리과장, 중앙도서관장 및 충청북도 사회복지과장, 여성정책관”으로, 제6조제2항중 “사회교육체육과 사회교육계장”을 “평생교육체육과 업무담당사무관”으로, “사회교육체육과 사회교육계 담당자”를 “평생교육체육과 업무담당자”로 한다

⑥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기획감사담당관, 초등장학과장, 중등장학과장, 과학기술과장, 행정과장”을 “공보감사담당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교육정보화과장, 기획관리과장”으로,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제6조중 “예산계장”을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⑦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기획감사담당관”을 “공보감사담당관”으로, 동조동항제3호중 “재무과 관재계장”을 “학교운영지원과 업무담당사무관”으로, 동조제5항제2호중 “각 계장(단, 청주교육청은 각 과장 및 각 계장)”을 “각 업무담당주사, 업무담당장학사(단, 청주교육청은 각 과장 및 각 업무담당주사, 업무담당장학사)”로, 동조제5항제3호중 “경리계장”을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별표 1】

실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명칭 및 위치

명 칭	설 치 학 교	위 치
충청북도농업계고등학교 공 동 실 습 소	청주농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덕1동 322
충청북도공업계고등학교 공 동 실 습 소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동 79
	충북공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666

관 계 법 령 발 취 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5546호)

제40조(보조기관) ④ 교육감 밑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1조(교육기관의 설치) ① 교육감은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43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을 둔다.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5916호)

제7조(실·국 등 기구의 설치) ①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되, 실·국 및 과·담당관의 설치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본청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공통필수기구를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필수기구외의 실·국의 명칭과 사무분장은 중앙교육행정조직과 지방교육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① 본청에 두는 부교육감·실장·국장·과장 및 담당관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에 두는 보조·보좌기관의 직급은 당해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과·담당관 등의 설치) 본청에 두는 과·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직속기관 등의 하부조직 설치) ①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은 시·도교육청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 또는 조례의 위임에 의한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별표 1]

본청 실·국 및 과담당관의 설치범위(체조제항 관련)

구	분	실·국의 수	과·담당관의 수
서울특별시 교육청		3실·국이내	14과·담당관이내
부산광역시 교육청		2실·국이내	12과·담당관이내
광역시	인구 : 800만 이상 학생 : 160만 이상	3실·국이내	13과·담당관이내
	인구 : 400만 이상 학생 : 80만 이상	3실·국이내	12과·담당관이내
	인구 : 200만 이상 학생 : 40만 이상	2실·국이내	11과·담당관이내
	기 타	2실·국이내	10과·담당관이내
도	인구 : 600만 이상 학생 : 120만 이상	3실·국이내	13과·담당관이내
	인구 : 300만 이상 학생 : 60만 이상	3실·국이내	12과·담당관이내
	인구 : 150만 이상 학생 : 30만 이상	2실·국이내	11과·담당관이내
	기 타	2실·국이내	10과·담당관이내

- 비고 : 1. 실·국 및 과·담당관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보조기관의 직급에 상응하는 정원을 실·국 및 과·담당관의 명칭이 아닌 기구의 정원으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표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2. 학생수는 각급학교의 당해연도 4월 1일 기준 학생수를 말하고, 인구수는 주민등록표상의 당해연도 4월 1일 기준 인구수를 말하며, 학생수·인구수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별표 2]

본청 공통필수기구(제7조제2항 관련)

명 칭	사 무 분 장
부교육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감에 대한 보조업무 ○ 교육감이 사고가 있는 경우 직무대행
기획관리실 (서울특별시·경기도교육청을 제외한 시·도 교육청은 기획관리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교육행정의 기획조정,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 예산·행정관리·법제·의회업무 등에 관한 사항 ○ 교육의 수요·공급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교육정보화과 (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행정전산화 및 정보화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학교운영지원과 (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별표 3]

본청에 두는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 (제8조제1항 관련)

구 분	부교육감	기획관리실장	국 장	과장·담당관
서울특별시 교육청	관리관 또는 장학관	2급 또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장학관·3급 일반 직 국가공무원·3 급 일반직 지방 공무원	장학관·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4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부산광역시 교육청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장학관		장학관·3급 일반 직 국가공무원	장학관·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4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경기도교육청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장학관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장학관·4급 일반 직 국가공무원	장학관·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5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대구·인천·광주· 대전·울산광역시 및 도교육청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장학관		장학관·4급 일반 직 국가공무원	장학관·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5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별첨 3)

의안번호	제 98-2 호
의결 년 월 일	1998. 11. . (제 회)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8. 11. 7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의안 번호	96-2
----------	------

제출년월일 : 1998. 11. 7.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관련 부서 : 행정관리담당관

제안이유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5916호)과 동규정시행규칙(교육부령 제725호)이 '98.10.16자로 제정·공포되고, 총정원제 도입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등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주요골자

- 교육위원회 의사국 및 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2,828명으로 함(안 제2조)
-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조)
- 정원감축에 따른 과원발생 현원에 대한 경과규정을 정함(부칙 제2조)
- 정원조정(감축) 내용(안 제2조)

구 분	현 재	조 정	증 감
계	3,130	2,828	△302
교육위원회 의사국	15	13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3,115	2,815	△300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과 같음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7조제5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2,828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위원회 의사국 : 별도 조례로 정한다.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 2,815명

제3조(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본청, 지역교육청 및 공립의 각급 학교 등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2조 각호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관 계 법 령 발 취 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5546호)

- 제42조(공무원의 배치) ①교육감의 보조기관과 제41조제1항의 교육기관 및 제43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당해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써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법령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②교육감의 보조기관과 제41조제1항의 교육기관 및 제43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5916호)

- 제13조(정원 책정의 일반 기준) ①정원은 정원관리의 단위기관(이하 “단위기관”이라 한다)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관할지역의 교육행정 수요 및 다른 시·도 교육청과의 균형 등을 참작하여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루도록 할 것.
 2. 업무의 성질·난이도 및 책임도 등을 참작할 것.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할 것. 다만,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복수직급으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전임전문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임전문직공무원의 채용기간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할 것.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위원회 의사국
 2.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3. 지역교육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4. 공립의 각급 학교

제19조(정원의 규정) ①시·도 교육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총정원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②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범위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기관별로 당해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는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 할 수 있다.

(별첨 4)

의안번호	제 96-3 호
의결 년 월 일	1998. 11.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8. 11. 7.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96-3

제출년월일 : 1998. 11. 2.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관련 부서 : 행정관리담당관

제안이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충청북도교육청기구설치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을 설치·운영 함에 있어,
-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135조에 의하여 각종 시설 및 설비 등의 사용료와 학생·학부모·지역주민 등에게 부담을 지우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 및 일반적인 운용사항을 통합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주요골자

- 기관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부운영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기관별 사용료 및 실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안 제5조, 제7조, 제11조, 제26조, 제33조, 제40조)
- 이용자의 제한규정을 정함 (안 제15조, 제24조, 제34조, 제38조)
-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상근거 마련 (안 제16조, 제25조, 제35조, 제39조)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과 같음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의 시설·설비 등의 사용료와 학생·학부모·지역주민 등에게 부담을 지우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 및 일반적인 운용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이하 “교육과학연구원”이라 한다), 충청북도단재교육원(이하 “단재교육원”이라 한다), 충청북도중앙도서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충청북도학생회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 학생회관(이하 “학생회관”이라 한다),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 및 지역교육청 소속 학생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이하 “공동실습소”라 한다) 등을 말한다.

제3조(운영규칙) 각 기관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장 교육과학연구원

제4조(자문협의회) 교육과학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문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제작실비징수) 교육과학연구원이 실험기구 및 교구를 제작공급 하였을 때에는 제작에 소요된 경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재정) 교육과학연구원의 소요경비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 이를 계상한다.

제 3 장 단재교육원

제7조(경비징수) 단재교육원 이용자에 대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숙식비 및 교재대 등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재정) 단재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 이를 계상한다.

제 4 장 도서관

제9조(도서관 운영위원회) ①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임기·회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②관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도서관 도서선정협의회) ①도서관 장서를 합리적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으로 관장이 정한 도서선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도서관 도서선정협의회의 구성·임기·회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제11조(사용료) ①도서관 자료 및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 연구실, 회의실 등 이용 수수료
3. 자료의 복사 또는 인쇄료

②제1항에 의한 사용료 징수액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도서관장이 정한다.

③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열람시간 및 근무시간) ①도서관의 열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이를 조정하되, 이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 자료실 : 09:00~19:00

나. 열람실 : 07:00~22:00

2.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

가. 자료실 : 09:00~18:00

나. 열람실 : 08:00~22:00

②도서관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시간은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장이 정한다.

제13조(휴관일) ①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이를 조정하되, 이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1. 월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제3호, 제4호 및 제9호를 제외한 다른 공휴일이 일요일과 중복될 때에는 개관한다.

②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임시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휴관 7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관외대출 제한) ①관외로 대출할 수 없는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귀중도서·자료 및 고전

2. 정기간행물 및 신문

3. 비도서 자료

4. 도서관내에서 열람률이 많은 도서

5. 기타 관장이 관외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②이용자가 일시에 관외대출을 청구할 수 있는 도서의 권수는 3권 이내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도서의 관의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하되, 1회 3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도서관 이용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도서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실내질서를 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전염병의 우려가 있는 자
3. 정신병자
4.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5. 도서관 시설의 이용자가 사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6. 기타 실내 질서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6조(이용자의 책임)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도서관의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분실하므로써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7조(특수시설의 이용) 도서관의 연구실, 회의실 등 기타의 특수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제정)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 계상한다.

제 5 장 학생회관

제19조(이용대상) 학생회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학생과 충청북도교육청 및 산하 소속직원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장은 근로청소년, 단체(기관) 및 일반인으로부터 이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학생회관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20조(이용기간) ①이용자는 관장이 정한 이용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관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이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전항 단서의 경우에는 연장한 매시간 마다 소정 사용료의 2할을 가산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학생회관의 이용) ①학생회관의 시설 및 설비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학생회관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1. 도서실 이용자 및 입·퇴관 방법 및 절차
2. 도서 및 자료의 열람과 대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3. 관외로 대출할 수 없는 도서

제22조(운영시간 및 근무시간) ①학생회관의 운영시간은 계절과 요일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편의와 학생회관 사정을 고려하여 관장이 정한다.

②학생회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시간은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장이 정한다.

제23조(휴관일) ①학생회관의 정기 휴관일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관장이 정하되 이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②학생회관 시설의 수리·정리·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하는 임시휴관일은 관장이 정한다.

제24조(학생회관 이용의 제한) ①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학생회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실내질서를 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전염병의 우려가 있는 자
3. 정신병자
4. 타인에게 위협을 미치게 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5. 교육에 유해되는 공연물을 공연할 때
6. 기타 학생회관의 질서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관장은 학생회관 이용자가 이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이용자의 책임)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학생회관의 자료나 물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분실하므로써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26조(사용료) 학생회관의 시설 및 설비 등의 이용에 관한 사용료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관장이 정한다.

제27조(사용료의 감면) ①다음 각 호에 한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충청북도교육청 및 교육위원회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2. 학생회관의 설치 목적에 상응하는 청소년의 문예활동 등과 기관의 행사
3. 관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4. 기타 교육적 차원에서 권장할 만한 행사

②제1항의 사용료 감면율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관장이 정한다.

제28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인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정지될 때

제29조(재정) 학생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 계상한다.

제 6 장 야영장

제30조(이용대상) 야영장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학생 및 교직원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장은 근로청소년, 단체(기관) 및 일반인으로부터 야영장 이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활동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31조(개장시기 및 개장시간) 야영장 시설의 개장시기 및 개장시간은 장장이 정한다.

제32조(시설이용의 허가) 야영장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야영장 이용신청서를 장장에게 제출하고 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사용료 징수) ①야영장 이용자의 숙식비 및 시설사용료는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징수액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장장이 정한다.

제34조(이용제한) 장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야영질서를 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전염병의 우려가 있는 자
3. 장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35조(이용자의 책임)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야영장의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분실하므로써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36조(재정) 야영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 계상한다.

제 7 장 공동실습소

제37조(이용대상) 공동실습소는 실업계고등학교 교원 및 학생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장은 근로청소년, 단체(기관) 및 일반인으로부터 공동실습소의 이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교원 및 학생의 실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용을 허가 할 수 있다.

제38조(이용 제한) 실습소 이용자가 실습중 다음 각호에 해당 할 때에는 소장은 실습소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실습에 지장을 초래 할 때
2. 실습소 안전수칙을 위반 할 때
3. 기타 실습에 부적합하다고 소장이 판단 될 때

제39조(이용자의 책임) ①이용자가 실습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실습소의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분실하므로써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이용자가 실습중 발생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40조(사용료) 일반인이 실습소를 이용 할 경우 실습에 필요한 실소요경비를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학생회관이용신청서

주 소 : _____

직 업(기관 또는 단체) : _____

성 명(기관장 또는 대표자명) : _____ 전화번호 _____

학생회관 조례와 규칙을 준수키로 하고 회관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용 목 적			
참 가 범 위	(인원 : 명)		
이 용 대 상			
이 용 기 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	
특 별 설 비			
사용료납부방법			
입관료징수유무	무	유	원
사 용 료	원		

관계 법령 발췌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제5546, '98. 6. 3)

제41조(교육기관의 설치) ①교육감은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법률 제5069, '95. 12. 29)

제130조(사용료의 징수 조례등) ①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35조(공공시설)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별첨 5)

의안번호	제 96-4호
의결 년 월 일	1998. 11. . (제 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8. 11. 7.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6-4
----------	------

제출년월일 : 1998. 11. 7.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관련부서 : 행정관리담당관

개정사유

교육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 구조조정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5916호)과 동규정시행규칙(교육부령 제725호)이 '98.10.16일자로 제정·공포됨에 따라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조직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주요골자

- 조례제정 목적에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를 삽입(안 제1조)
-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계조직의 폐지로 현행 의사계와 의안계를 폐지하고 의사과의 분장사무를 신설(안 제3조)
- 지방공무원 감축 추진계획에 의거 의사국의 정수를 15명에서 13명으로 조정(안 제4조)
-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

개정근거

-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0조)

조 례 안 : 붙임

참고사항 : 붙임

- 신·구 조문 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2조 규정”을 “제22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로 한다.

제2조 중 “의장의”를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로 한다.

제3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운영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에 관한 사무
3. 회의진행 보좌
4. 교육위원 활동 보좌
5.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
6. 청원 및 진정처리
7. 회의록 작성·보관·발간 및 열람
8. 교육위원회 활동 홍보 및 각종 간행물 발간
9. 교육위원 재산등록 등 신분제에 관한 사항
10. 직원인사 및 복무관리
11. 문서보안 및 관인의 관리
12. 소관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
13. 경비·방청 및 회의장 질서 유지
14. 시설장비 관리 및 물품 수급관리
15. 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 사항

제4조중 “15명”을 “13명”으로, “그 내역은 별표와 같다”를 “직급별 정원은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교육위원회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규정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청북도교육위원회사무직원의사무분장 규정('96.2.29 규정 제4호)은 이를 폐지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연	명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이하 “의사국”이라 한다)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u>제22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제10조에</u>	제2조(직무) 의사국은 교육위원회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교육위원회의·회의와 운영 등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2조(직무) <u>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의</u>	제3조(조직) ①생략 ②생략 ③생략 ④ <u>교육위원회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의사과에 의사계와 의안계를 두되, 의사계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의안계장은 5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u>	제3조(조직)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④ <u>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기본운영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에 관한 사무 3. 회의진행 보좌 4. 교육위원 활동 보좌 5.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 6. 청원 및 진정처리 7. 회의록 작성·보관·발간 및 열람 8. 교육위원회 활동 홍보 및 각종 간행물 발간 9. 교육위원 재산등록 등 신분에 관한 사항 10. 직원인사 및 복무관리 11. 문서보안 및 관인의 관리 12. 소관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

제4조(사무직원의정수) 의사국에 두는 사무
직원의 정수는 15명으로 하며, 그 내역은
별표와 같다.

제5조(직원의 파견 요청) 생략
(신설)

13. 경비·방청 및 회의장 질서 유지
14. 시설장비 관리 및 물품 수급관리
15. 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 사항

제4조(사무직원의정수).....
.....13명....., 직급별 정원은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원의 파견 요청) 현행과 같음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따로 교육위원회의 교육규칙
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규정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청북
도교육위원회사무직원의사무분장규정('96.2.
29 규정 제4호)은 이를 폐지한다.

관계 법령 발췌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5546호)

제22조(의사국의 설치 등) ① 교육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사국을 두고, 의사국에는 의사국장과 직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국장 및 직원(이하 이 절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④ 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교육감이 임명한다.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5916호)

제10조(교육위원회 의사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 의사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수, 직급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정원 책정의 일반 기준) ① 정원은 정원관리의 단위기관(이하 “단위기관”이라 한다)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관할지역의 교육행정수요 및 다른 시·도 교육청과의 균형 등을 참작하여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루도록 할 것.

2. 업무의 성질·난이도 및 책임도 등을 참작할 것.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할 것. 다만,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복수직급으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전임전문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임전문직공무원의 채용기간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위원회 의사국

2.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3. 지역교육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4. 공립의 각급학교

제19조(정원의 규정) ①시·도 교육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총정원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②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범위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기관별로 당해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는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 할 수 있다.

(별첨 6)

의안번호	제 96 - 호
의결 연월일	1998. 11. . (제 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발 의 자 김 광 수 교육위원 외 2인

발의년월일 1998. 11. 17.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제 96 - 호
----------	----------

발의년월일 : 1998. 11. 17.

발 의 자 : 김광수 교육위원 외 2인

개정사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5546호; '98.6.3.)됨에 따라 종전의 교육위원 정수가 11인에서 7인으로 축소되어 현행의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위원회의 위원수로는 내심있는 소위원회운영이 불가능한 바, 소위원회 구성위원수의 제한을 삭제하여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충실한 교육위원회 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골자

소위원회의 위원수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감사·조사소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바, 위원수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소위원회 구성에 신축성을 부여함(안 제37조 제2항)

개정근거

- o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15조 제4항
- o " 제18조 제1항

규 칙 안 : 덧붙임

참고사항

- o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 o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충청북도교육위원회규칙 제 호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소위원회의 위원수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사 항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

○ " 제18조 제1항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37조(소위원회 구성) ①(생략)</p> <p>② 소위원회의 위원수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다만, 감사·조사소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 ⑤ (생략)</p>	<p>제37조(소위원회의 구성) ①(현행과 같음)</p> <p>② 소위원회의 위원수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단서삭제)</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u></p> <p style="text-align: center;"><u>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p>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15조 (회의) ④ 교육위원회의 개회·휴회·폐회·회기 기타 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교육위원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 18조 (소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위원회는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